포항시 공고 제2018-8호

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주민총수 공표

지방자치법 제15조(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)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(주민 총수의 공표)의 규정에 의거 **2018년도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 총수 및 연서대상 주민수**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- 다 음 -

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주민총수				비 고 (연서하여야 할 주민수)
계	19세 이상의 주민 중 (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)			
	인구수 (주민등록자)	재외국민	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	
422,567	422,065	221	281	4,226

2018년 1월 3일

포 항 시 장